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에 대한 상담·교육 근거 마련〉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06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1
III. 검토의견	2
1.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에 대한 상담·교육 근거 마련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기관 의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광규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7.
3. 회 부 일 : 2025.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방식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임시조치 부과율은 15.2% (보호자 등 위탁 9.3%, 분류심사원 위탁 5.9%)에 그치고 있어 그 부과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채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소년부 판사들은 「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임시조치 성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적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 미비로 의뢰 건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 18조의2 신설).

III. 검토의견

1.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소년에 대한 상담·교육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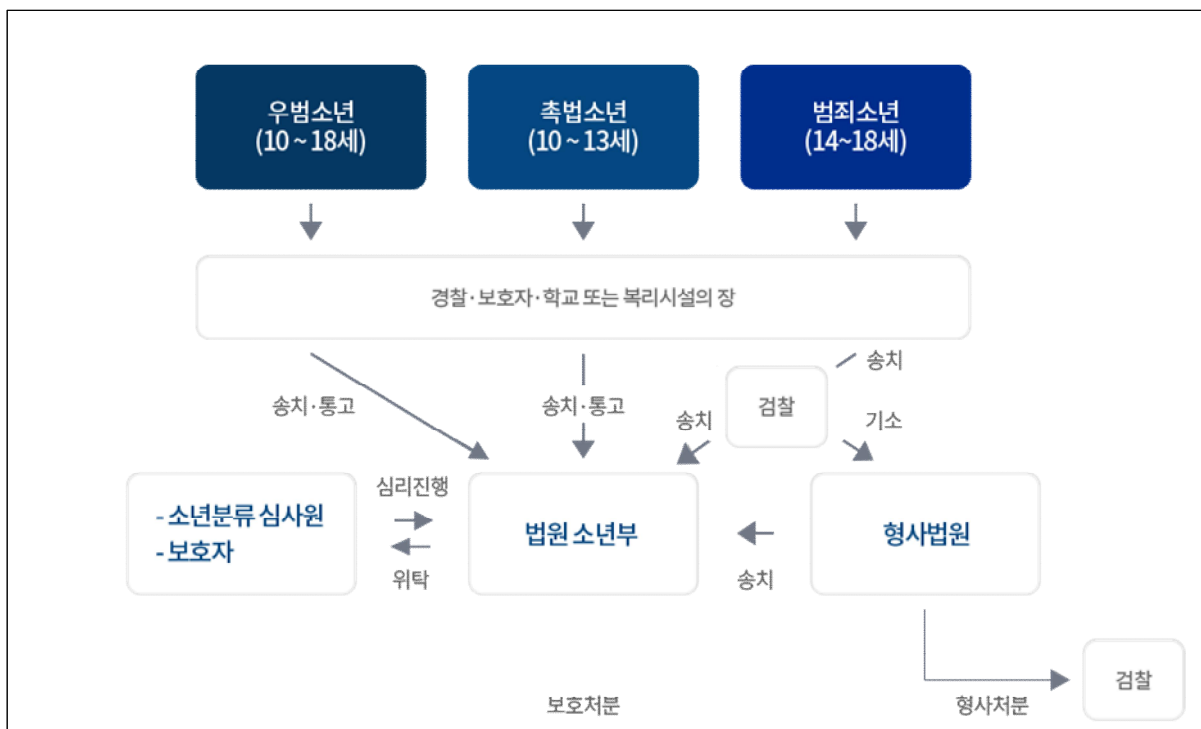
- 개정안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담·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8조의2(상담·교육 등)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u>

나. 검토의견

- 소년보호사건은 특정 사건을 송치·통고받은 소년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수리함으로써 시작되고, 이후 조사와 심리,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됨.

<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



-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조치로써 소년을 보호자, 적당한 사람이나 시설, 병원 그 밖의 요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는데(법 제18조), 이는 심리절차의 진행과 소년의 보호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짐.¹⁾

1) 오영근 외 15인, 소년법, 박영사 (2021), 110.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임시조치는 소년의 신병을 감독·보호하는 한편, 소년을 관찰·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고 일반 형사법원에서의 구속기준보다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음.

- 실무에서는 ① 소년 사건에 해당할 것(심리조건), ② 소년이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상당성), ③ 심리가 개시될 것이 충분히 예견가능할 것(개연성), ④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소년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위하여 신병확보가 필요할 것(필요성), ⑤ 소년에 대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것(긴급성) 등을 그 요건으로 보고 있음.²⁾

- 2020-2023년 동안 임시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결정건수 자체는 증가추세를 보이나, 전체 법원 접수사건 중 임시조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7%에서 2023년 15.2%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2)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 2014, 139-140.

< 임시조치 유형별 결정 현황(2020-2023) >

(단위: 건,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결정	비중	결정	비중	결정	비중	결정	비중
법원 접수사건	38,590	100.0	35,438	100.0	43,042	100.0	50,094	100.0
임시조치 소계	6,436	16.7	6,421	18.1	7,685	17.9	7,634	15.2
보호자 등 위탁	3,407	8.8	3,754	10.6	5,002	11.6	4,676	9.3
병원 등 위탁	-	-	-	-	-	-	-	-
분류심사원 위탁	3,029	7.8	2,667	7.5	2,683	6.2	2,958	5.9

○ 현행법상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는 재판 전 소년에 대한 개입수단이 임시조치로 한정되어 있어 수사단계에서 신병확보, 재범위험성,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개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속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시설구금을 할 만큼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소년을 위한 적절한 개입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소년범에 대한 관리 공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³⁾

- 일부 소년부 판사의 경우 「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 전 교육’의 개념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미국과 영국 등의 경우 ‘재판 전 보호관찰제도’를 통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도 다양한 관리조치를 실시하고 있고,⁴⁾

3) 국회입법조사처,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2021. 11., 21.

4) 김지선·박경규·김혁·이유경, 「소년에 대한 재판 전 감독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66-144

미국은 유죄판단 심리 전 미결구금으로 소년에 대한 재판 전 일시적 보호·감독을 제공하는데, 주

독일 「소년법원법」은 판사가 일시적으로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⁵⁾

- 개정안은 임시조치의 일환으로서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처분 전 상담·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에
소년에 대한 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소년법에 대한 관리 공백의 문제를 해소하여 소년사건의 재범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다만,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보조수단인데, 개정안은 “비행
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조사 또는 심리절차와의 관련성이 적다는 점에서
임시조치의 일환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일종의
‘재판전 보호관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州)별로 재택 혹은 지역사회 감독, 일일 혹은 오후 보고센터, 기숙제 시설 배치 등 다양한 시설
구급에 대한 대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플로리다 주, 뉴욕 주, 뉴저지 주, 캘리포니아 주,
조지아 주 등에서 대안 프로그램에 관해 주(州)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영국은 중대범죄나 상습범죄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년의 범죄에 대해 교육과 감독의 측면에서
소년피의자와 보호자의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5) Jugendgerichtsgesetz (JGG)

§ 71 Vorläufige Anordnungen über die Erziehung

(1) Bis zur Rechtskraft des Urteils kann der Richter vorläufige Anordnungen über die
Erziehung des Jugendlichen treffen oder die Gewährung von Leistungen nach dem Achten
Buch Sozialgesetzbuch anregen.

‘재판전 보호관찰’의 일환에 해당한다면 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로 그 요건, 상담·교육의 내용, 절차 등을 법률 또는 대법원 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정안은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제18조(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소년부 판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⁶⁾

○ 또한, 개정안은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명할 수 있다고 하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운영현황 상 피해자 보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⁷⁾

○ 개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률 근거화를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6)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2020)는 임시조치가 소년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임시조치가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법무부 보도자료, 「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 제도 개선」 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 (2020. 11. 20.).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 청소년 비행예방 지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 소속하에 각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둔다.

②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및 연구·개발 등

개정안(한지아의원안, 의안번호 제438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곽규택의원안, 의안번호 제9007호)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년법 개정안(한지아의원안)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곽규택의원안) 비교 >

소년법 개정안 (한지아의원안, 의안번호 제4380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곽규택의원안, 의안번호 제9007호)
제67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①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탁 기관·단체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정한다.	제42조의4(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에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 관계기관의 의견

- 개정안에 대한 각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법무부**는 소년이 심리기간 중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처분 전 교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법원에 따라 ‘처분 전 대안교육’ 의뢰 편차가 크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처분 전 상담·교육’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처분의 명확성 원칙상 ‘처분 전 상담·교육’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52